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74
----------	---------

제출연월일	2005. 11.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수수료와 관련된 제반 법규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재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수수료를 감면하여 그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 행정자치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원가이하의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거창군수입증지조례』 제16조(증지의 소인), 제17조(증지의 무효) 및 제18조(증지의 환매) 규정에 따라“기납수수료의 반환”을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으로 변경함.(안 제6조)
-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 변경과 상위 법규정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 신설 : 12종(상위법의 규정에 의거 신설)
 - 잡종재산의 대부신청, 공유재산의 계속대부신청, 차고지설치확인신청, 건설기계저등록(말소)신청,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 소하천점사용기간연장신청, 소하천폐천부지 교환신청,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신고
- 폐지 : 6종(상위법의 수수료 법정화에 따라 삭제)
 - 인감증명발급신청, 인감개인신고, 부재자사실확인, 원자재소요량 사실확인, 실수요자사실확인, 관상수목자가생산사실확인
- 변경 : 5종(수수료 현실화)
 - 부동산소유권사실확인(1,000→2,000),세목별과세증명(500→1,000), 납세완납증명(500→1,000),개별공시지가확인(500→1,000),사도개설허가및축조변경허가신청(1,000→5,000)

■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자치법」 제128조
- 「거창군수입증지조례」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 「인감증명법」 제12조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지방세법」 제38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지적법」 제14조
- 「지방재정법」 제83조
-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9조
- 「사도법」 제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14조 및 2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제15820호(그2) 2004.10.15
- 사실확인서발급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56호 및 제80호
-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경상남도 세정과-3243(2005. 04. 19)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1호의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5조”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6.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후휴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8.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9.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별표 1】 중

제1호 인감에 관한 사항란 · (1)인감증명 발급신청란 · (2)인감 개인신고란 및 제2호 신상에 관한 사항 (3)부채자 사실확인란을 각각 삭제한다.

제3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중 (1)원자재소요량 사실확인란 · (2)실수요자 사실확인란 및 (6)관상수목자가생산사실확인란을 각각 삭제하고, 제7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7)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	1통	2,000
-----------------	----	-------

제4호 지방세에 관한 사항 (1)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및 (2)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 증명의 요액

란 “500”을 “1,000”으로 한다.

제7호 부동산에 관한 사항 (1)개별공시지가 확인의 요액란 “500”을 “1,000”으로 하고, (2)토지(임야) 대장등본 지가병기발급란을 삭제하며, (2)토지(임야)대장등본 지가병기발급란 다음에 제3목·제4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잡종재산의 대부신청	1건	5,000
(4) 공유재산의 계속대부신청	1건	1,300

제8호 측사에 관한사항 (3)“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을 “내수면 어업허가 및 면허 신청”으로 한다.

제11호 건설 등에 관한사항 (1)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 요율란 “1,000”을 “5,000”으로 하고, (1)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란 다음에 제2목 내지 제7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차고지설치확인신청	1건	5,000
(3)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	1건	1,000
(4)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1건	※참조
※요 액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5)소하천점사용기간 연장 신청	1건	1,300
(6)소하천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5,000
(7)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1건	5,000

제15호 지역경제에 관한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 경제에 관한 사항		
(1)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20,000
(2)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	1건	20,000
(3)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20,000
(4)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신고	1건	2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처리기간 중 신청사항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생략)</p> <p>1. <u>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u></p> <p>.....</p> <p>2 - 4. (생략)</p> <p>5 - 9. <신설></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현행과 같음)</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5조의.....</p> <p>.....</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p> <p>6. 「<u>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p> <p>7.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8. 「<u>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9. 「<u>장애인 복지법</u>」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1. 인감에 관한 사항				1. 인감에 관한 사항			
				〈삭제〉			
(1) 인감증명 발급신청	1통	500		〈삭제〉			
(2) 인감 개인신고	1건	500		〈삭제〉			
2. 신상에 관한 사항				2. 신상에 관한 사항			
(1) - (2) (생략)				(현행과 같음)			
(3) 부재자사실확인	1통	800		〈삭제〉			
(4) - (7) (생략)				(현행과 같음)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사항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사항			
(1) 원자재 소요량 사실확인	1통	1,000		〈삭제〉			
(2) 실수요자 사실확인	1통	1,000		〈삭제〉			
(3) - (5) (생략)				(현행과 같음)			
(6) 관상수목자가생산사실확인	1건	10,000		〈삭제〉			
(7) 소유사실확인	1통	1,000		(7) 부동산 소유권 사실확인	1통	2,000	
(8) - (12) (생략)				(현행과 같음)			
4. 지방세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에 관한 사항			
(1)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500		(1)	1,000	
(2) 납세완납(징수유예, 미과세) 증명	1통	500		(2)	1,000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현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7. 부동산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 확인		1필지		500				(1)				1,000			
※ 비고: 동일필지 당해연도 공시일자별 추가분 200														
(2) 토지(임야)대장등본 지가 병기발급		1필지		300				〈 삭 제 〉							
※ 비고 : 동일필지 당해연도 공시일자별 추가분 200															
〈신 설〉								(3) <u>잡종재산의 대부신청</u>		1건		5,000			
〈신 설〉								(4) <u>공유재산의 계속대부신청</u>		1건		1,300			
8. 측사에 관한 사항								8. 측사에 관한 사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내수면 어업허가 신청</u>		1건		10,000				(3) <u>내수면 어업허가 및 면허 신청</u>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11. 건설 등에 관한 사항								11. 건설 등에 관한 사항							
(1) <u>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u>		1건		1,000				(1)				5,000			
〈신 설〉								(2) <u>차고지설치확인신청</u>		1건		5,000			
〈신 설〉								(3) <u>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u>		1건		1,000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신설〉				(4)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 허가신청	1건	※참조	
				※ 요액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신설〉				(5) 소하천점사용기간 연장 신청	1건	1,300	
〈신설〉				(6) 소하천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5,000	
〈신설〉				(7)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1건	5,000	
〈신설〉				15. 지역 경제에 관한 사항			
〈신설〉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	
〈신설〉				(2)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1건	20,000	
〈신설〉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20,000	
〈신설〉				(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1건	20,000	